

「직원명예퇴직 규정」 개정문

개정 2019. 2. 25. · 시행 2018. 9. 1.

원본(law.syu.ac.kr)에 개정문이 없어,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.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.

「직원명예퇴직 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및 제7조제1항 중 "인사팀장"을 각각 "총무인사팀장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